

벤처기업에서 외부전문가 대학교수에 스톡옵션 부여 계약 BUT 대상 연구개발 중단으로

스톡옵션 취소 분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8762 판결



1. 사안의 개요

- (1) 벤처기업 신약개발회사에서 DDS 전문 약학대학 교수에게 스톡옵션 2만주 부여
계약 체결
- (2) 회사에서 대상 DDS 제제기술 연구 중단을 이유로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
여 취소 결의 및 통지
- (3) 대학교수(원고)가 벤처기업 회사(피고)를 대상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이
전(주권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함

2. 쟁점 - 스톡옵션 취소사유

(1) 상법 시행령 규정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

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스톡옵션 운영규정

제8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당해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

한 경우

-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 전문가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ㄱ. 부여대상자가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 경우
- ㄴ.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 중인 과업의 내용을 당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 ㄷ.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

- ㄹ.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회사와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ㅁ. 기타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의 취소 조항

계약서 제7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원고가 본 계약 이후에 원활한 업무협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피고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회사에서 DDS 연구개발 중단으로 대학교수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 회사 주장 배척함.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의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

4. 스톡옵션 계약서의 취소사유 우선 적용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 및 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상 취소사유 -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서 협조란 피고의 자문이나 협조, 연구 요청 등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부 전문가로서 피고에서 요

구하는 자문 내지 요청 등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무렵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으로 협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상 협력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업무협력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8762 판결

스톡옵션, 회사소송, 기술법무,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